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338211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 1.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2. ○○○○시 ○○○구

소송대리인 B

3. ○○○○시 ○○○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시는 6,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피고 ○○○○시 ○○○구는 1,6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피고 ○○○○시 ○○○구는 29,72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학교법인의 부속병원(D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E병원 및 F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 ○○○구 G 외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부속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받고 있다.

나. 재산세 및 지역교육세의 부과처분 및 납부

1) ○○○○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병원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6년분으로 2016. 9. 2. 재산세(토지분) 9,590,320원, 지방교육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1,279,120원을, 2019. 4. 2. 재산세(토지분) 565,760원, 지방교육세 68,19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7년분으로 2017. 9. 5. 재산세(토지분) 19,861,170원, 지방교육세 2,617,650원을, 2019. 4. 2. 재산세(토지분) 1,129,140원, 지방교육세 139,18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F병원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6년분으로 2016. 9. 2. 재산세(토지분) 60,910,260원, 지방교육세 8,961,520원을, 2017년분으로 2017. 9. 2. 재산세(토지분) 114,091,230원, 지방교육세 16,840,1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시 ○○○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계산한 결과에 근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재산세 등 납부 내역(E 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326,877,950	667,183,406	1,775,323,549	10,156,080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1,384,388	1,801,550	3,550,646	
		과세표준	-	667,183,406	1,775,323,549	
		산출세액	-	934,053	2,485,453	
지방교육세	과표		1,384,388	1,801,550	3,550,646	1,347,310
	산출세액		276,870	360,320	710,12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379,242,850	1,521,704,577	3,625,560,401	20,990,310
		산출세액	1,646,214,	4,886,818	7,251,1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521,704,577	3,625,560,401	
		산출세액	-	2,130,383	5,075,785	
지방교육세	과표		1,646,214	4,886,818	7,251,120	2,756,830
	산출세액		329,240	977,370	1,450,220	

[재산세 등 납부 내역(F 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11,501,901,320	-	60,910,260
		산출세액	-	44,807,605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1,501,901,320	-	
		산출세액	-	16,102,660	-	
지방교육세	과표		-	44,807,605	-	8,961,520
	산출세액		-	8,961,520	-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21,350,229,481	-	114,091,230
		산출세액	-	84,200,917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21,350,229,481	-	
		산출세액	-	29,890,320	-	
지방교육세	과표		-	84,200,917	-	16,840,180
	산출세액		-	16,840,180	-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납부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귀속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중 E병원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은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에, 재산세 중 F병원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은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피고 ○○○○시에 귀속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구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1])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시 ○○○구청장과 ○○○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6년분 부분은 구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2017년분 부분은 구 지방세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개정 전후가 변화가 없으므로 구분하여 설시하지 않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의 규정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 ○○○○시는 위 ③항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과세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뿐더러{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이 사건 쟁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경감규정 및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고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형식을 기반으로 개정된 것으로 종합토지세의 이원화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하는 종전의 규정과 달리 '과세대상'을 구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어선 안 되며,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에도 분명하였다고 보인다.

라) 지방세법은 2019. 12. 3.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즉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계산내역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시는 6,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7.부터, 피고 ○○○구는 1,6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송달 다음날인 2021. 10. 6.부터, 피고 ○○○구는 29,729,1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별지 1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세

■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1

별지 2

[정당 세액 계산 내역(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326,877,950	229,685,081	2,212,821,875	9,718,590
		산출세액	1,384,388	489,055	4,425,644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229,685,081	2,212,821,875	
		산출세액	-	321,560	3,097,938	
지방교육세	과표		1,384,388	489,055	4,425,644	1,259,810
	산출세액		276,870	97,810	885,13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379,242,850	872,649,543	4,274,615,434	19,819,550
		산출세액	1,646,214.	2,417,949	8,549,231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872,649,543	4,274,615,434	
		산출세액	-	1,221,710	5,984,448	
지방교육세	과표		1,646,214	2,417,949	8,549,231	2,522,670
	산출세액		329,240	483,580	1,709,850	

[정당 세액 계산 내역(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5,433,119,510	6,068,781,810	48,772,700
		산출세액	-	20,532,478	12,137,564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5,433,119,510	6,668,781,810	
		산출세액	-	7,606,370	8,496,290	
지방교육세	과표		-	20,532,478	12,137,564	6,534,010
	산출세액		-	4,106,500	2,427,51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12,554,412,182	8,795,817,300	96,499,600
		산출세액	-	49,017,649	17,591,635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2,554,412,182	8,795,817,300	
		산출세액	-	17,576,180	12,314,140	
지방교육세	과표		-	49,017,649	17,591,635	13,321,850
	산출세액		-	9,803,530	3,518,320	

[부당이득금 계산 내역]

세목	병원구분	귀속연도	과세·납부액	정당 세액	차액	귀속
재산세		2016	10,156,080	9,718,590	437,490	○○○구 귀속 (1,608,250)
		2017	20,990,310	19,819,550	1,170,760	
		2016	60,910,260	48,772,700	12,137,560	○○○구 귀속 (29,729,190)
		2017	114,091,230	96,499,600	17,591,630	
지방교육세		2016	1,347,310	1,259,810	87,500	○○○○시 귀속 (6,267,500)
		2017	2,756,830	2,522,670	234,160	
		2016	8,961,520	6,534,010	2,427,510	
		2017	16,840,180	13,321,850	3,518,330	